

R&D지원

IT·SW

ICT R&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

ICT 핵심·융합 기술 이전을 통해 신시장 창출 수요가 있는
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학·출연연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이
수요 맞춤형 기술 공급 지원

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**지원대상** : 중견·중소기업
전문기관 : 정보통신기획평가원

■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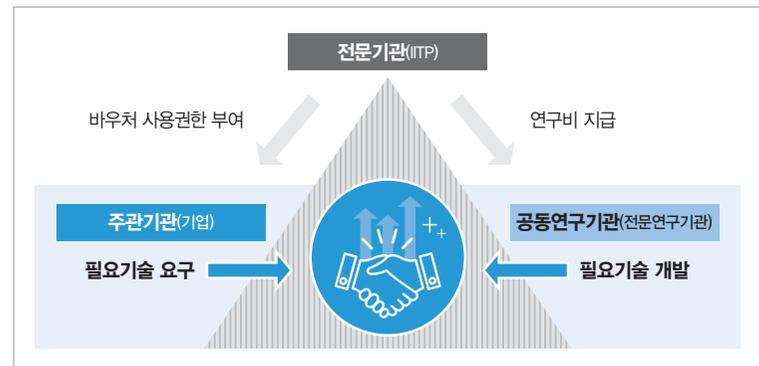
- **(주관연구개발기관)** 국내 중소기업(초기창업자(기업)·벤처기업 포함)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
- **(공동연구개발기관)** ICT R&D 역량*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주문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전문연구사업자**
 - * ICT 기술을 개발 및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구비,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
 - ** 접수마감일 현재,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(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한국연구산업협회에 등록된 "주문연구개발업" 기업에 한함(시험/검사 및 분석업 제외)

■ 지원내용

구분	지원유형		공모방식
	융합촉진형(12개월)	중기지원형(21개월)	
지원내용	1년 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·산업간 융합 신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	ICT 혁신기술(AI, 빅데이터, 클라우드 등)을 통한 ICT 기반 이종기술·산업간 융합 신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	자유공모
	이종기술: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 중분류 이상 기술간 결합 이종산업: ICT와 비ICT기술·제품의 결합(단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기술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 이어야함)		
지원기간	12개월	21개월(9개월+12개월)	
지원예산	103.045억원	72.000억원	
지원규모	과제당 5억 원 이내	과제당 (1차년도) 4억 원 이내 과제당 (2차년도) 4억 원 이내	

- **(지원분야)**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*, 국가전략 10대 기술**, 5G, 빅데이터, 비대면(언택)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분야 중점 지원
 - *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: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
 - ** 국가전략 10대 기술 : ① 인공지능 ② 사반도체 ③ 양자 ④ 클라우드 ⑤ 이동통신 ⑥ 메타버스 ⑦ 블록체인/NFT ⑧ 사이버보안 ⑨] 미래자동차 ⑩ UAM

[R&D 바우처 지원]





R&D 바우처

주관연구개발기관(기업)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(전문연구개발기관)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 대가는 바우처(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)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불함

■ 지원규모

- (예산규모) 402.09억원(신규 278.09억원, 계속 124억원)
- (융합촉진형) 과제당 총 5억원 이내
- (중기지원형) 과제당 총 8억원 이내(1년 4억 원 이내)



기술매칭지원서비스(이지매칭시스템)

-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, ICT R&D 혁신 바우처 기술매칭(이지매칭 <https://ezmatching.iitp.kr>)을 통해 매칭 신청 등록 필요
-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ITP 매칭코디네이터 및 기술중개기관을 통해 매칭을 지원할 예정
- 매칭지원 절차: ICT R&D 혁신 바우처 기술매칭(이지매칭시스템)에 매칭 신청(기업) → ITP 또는 기술중개기관이 해당기술분야 전문가(전문기관) 탐색 및 추천 → 매칭데이 개최 → 매칭연결 및 사업계획서 작성 → 바우처사업 신청

■ 문의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(iris.go.kr)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(iitp.kr)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확산팀 (☎ 042-612-8269, 8265, 8264, 8262)

R&D지원

IT·SW

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

암호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ICT 융합 분야 대국민 공공 서비스·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비복호화 기반 사이버공격·악성행위의 탐지·대응 원천기술, 최적화·실증 서비스 개발 및 공유·협력 플랫폼 구축 지원

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지원대상 : 대·중견·중소기업
전문기관 : 정보통신기획평가원

■ 지원대상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※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(정의)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※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